

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

수신

(경유)

제 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를 명령합니다.

1. 총괄

(단위 : 개)

구분	총 계	접착제	페인트	실란트	퍼티	벽지	바닥재	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
확인취소 대상제품								

2. 세부현황

구분	제품명	제조자 명/수입 자명	오염물 질 채 취 검 사 일자	당초 적합확인 세부사항				오염물질 채취 검사 결과			
				시험 기관	방출시험 결과($\text{mg}/\text{m}^2 \cdot \text{h}$)			검사 기관	검사 결과($\text{mg}/\text{m}^2 \cdot \text{h}$)		
					폼알데 하이드	톨루엔	총휘발성유 기화합물		폼알데 하이드	톨루엔	총휘발성유 기화합물
접착제											
페인트											
실란트											
퍼티											
벽지											
바닥재											
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											

※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$\text{mg}/\text{m} \cdot \text{h}$ 로 한다.

유역(지방)환경청장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일)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공개 구
분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